

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20194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201942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7가합221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문중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김덕현

피고 1, 2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형

3. 주식회사 D

4.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20. 10. 21.

판결 선고 2020. 11. 25.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7가합221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74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226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3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595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284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적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급부의 소인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1심이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제1심 법원은 위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가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종중이 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일부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을가 제1호증(정기총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정경근

판사최은정

별지